

◆ 양록정책

수입대체 사업인 양록은 축산업계의 사생아인가? 당국의 정책부재로 위기에 직면 했다.

본회 13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건의내용과 답신전문을 전재함.

건의 내용

수신 : 보건사회부 장관

1. 녹용수입억제

1987년 녹용수입량을 1만kg 이내로 감량조정 요구는 국산녹용 증산에 따른 적정량이라 생각되며 밀수녹용이 날로 늘고 있음을 감안할때 추천 수입량 감량이 불가피 한것으로 사료됨

2. 녹용 유통의 현대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녹용의 품질 표시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녹용은 인체를 보양하는 약제인 관계로 품명, 생산, 년월일, 생산지 및 생산자등을 기록한 표시를 해서 신용거래토록 할것을 주장함. (품질표시는 당국 또는 당국이 위임한 기구)

3. 녹용연구

녹용은 인삼과 함께 우리민족의 전통보약이며 국내양록이 발전함에 따라 서민대중이 애용하는 녹용대중화 시대를 맞이했으나 녹용효능과 용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한의원 또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수요자를 오도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녹용효능을 연구발표해서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회신 내용

수신 : 한국양록협회장

귀하가 87.3.26 일자 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고가수입 한약제중 녹용, 녹각의 수입과 관련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으로 하여금 동품목 수입추천시 각종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고시(상공부 고시 제 86-23 호 86.6.28)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및 제품의 표시기재 사항등에

대한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이와 동시에 동품수입 물량조절에 대하여도 관련업소에 외화절약 측면에서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나. 또한 위 수입 한약제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로 하여금 수입한약제 관리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산지, 용량, 등급, 포장, 년월일등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양육되는 녹용등에 대하여도 한약재로 유통될시 사전 품질확보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반관리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건의내용

수신: 농림수산부 장관

제목: 양록행정에 대한 건의서 제출

본 협회 제 13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별첨건의서를 제출합니다.

1. 결의된 조항중 1항의 사슴사육 등록제는 국내양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슴품종별 사육동향 및 녹용수급 계획수립등 당국의 양록시책에 기본자료가 될 것이며 본협회로서는 사양관리와 유통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대상과 절차는 정부당국이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며 당국이 사슴농장 시설과 사슴품종별 두수등 등록요건의 확인은 본회가 행정지원토록 할수있으며 당국이 본안 시행에 협조를 요구하면 적극협력 할 것입니다.
2. 녹용유통의 현대화와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녹용(국산과 외산)의 품질표시 및 직판장을 개설 유통체제를 간소화해서 음성거래(밀수입)를 방지하며 적정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수립을 기대합니다.

회신내용

수신: 한국양록협회장

제목: 건의서 회신

1. 귀협회에서 우리부에 건의한 양록사업에 대한 정책건의는 양록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화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어지며.
2. 생산자 단체인 귀협회에서도 양록사업의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등 양록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건의 내용

수신: 재무부 장관

1. 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입법취지는 수입녹용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외화절약과 녹용, 과 소비억제에 기인하며 국내양육은 녹용의 국산화를 목적인다 하겠읍니다. 그런데 법취지와는 달리 녹용은 과잉수입되어 녹용국산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2. 녹용수입을 억제하고 국산녹용 자급을 촉진하려면 수입녹용에 대해서는 관세를 60%로 환원하고 특별소비세를 현행대로 적용해 수입을 억제하는 반면 국산녹용에 대해서는 타가축에 적용치 않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해서 국내양육을 활성화시켜 녹용자급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조세형평 원칙을 말하지만 수입녹용은 1차 가공해서 수입되고 있는 반면 국산녹용(농장생산품)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축산부산물 이므로 비과세 되어야한다.
특소법 2조1항3호(인삼사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또는 약사법에 “사슴농장에서 수거하는 녹용류를 반영”하는 방법과 특소법 시행령 부칙 3조 6호 다항에 “녹용, 로얄제리(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해구신”에 녹용과 로얄제리를 같이 적용하는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한다.
3. 1987년도 특별소비세는 본회의 과세자료를 과표기준으로 해주기 바라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양육사업자 과세기준 조정에 본회 실무자로 하여금 협조케 하겠다. 현행 특별소비세 부과에서 수입녹용의 과표액과 국산녹용의 과표액의 차이점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수입녹용에는 수입원가+관세와 이의 방위세=특소세 과표액이며

국산녹용에는 시중거래 가액이 특소세 과표액으로 산정하는 관계로 수입녹용 과표액에 비해 국산녹용 과표액이 월등이 높는데 이같은 불공정한 정책은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뿐아니라 양육사업의 위기를 초래케한 중대원인이 되고 있으니 금년도 과표는 형평을 기할것을 촉구하며 이상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기에 처한 양육을 활성화시켜 녹용자급을 앞당길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법시행에 참조있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수신: 한국양육협회장

제목: 건의회신

1. 현행관세율은 국회를 거쳐 88년까지 예시되어 있는바 현재로서는 관세율 개정이 곤란하며 88년 이후 관세율 조정시 참고할것임.
 1. 국산농용과 수입농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차등과세 GATT협정(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는 등 소비세제 과세체계상 채택하기 곤란하며,
 1. 사슴사육이 농가부업적인 규모(연간소득금액 240만원이하)일때는 현행소득세 법령상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있음.
 1. 양록농가에 대한 축산자금 융자 요망건은 축협중앙회에 이첩함.
- 재 무 부 장 관

축협: 당회가 취급하고 있는 축산자금은 축산진흥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이며 이는 정부(농수산부)의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하며 당회 자체자금으로는 은행업무가 일관하여 양록자금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회회원 조합에서는 조합원에 한하여 양축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축 협 중 앙 회 장

5 페이지에서 계속

15 페이지에서 계속

<p>떨어짐을 알 수 있다.</p> <p>鹿茸의 내분비기능 실험에서는 梅花鹿이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다른 품종들도 내분비기능이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중국산馬鹿도 이 실험에서는 내분비기능이 인정되었다.</p> <p>이상의 실험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造血機能, 내분비기능등의 鹿茸의 일반적 효능은 북미·카나다産의 ELK와 만주産 梅花鹿이 다른 품종에 비해 약간 우월함을 알 수 있고, 타 품종도 어느 정도 일정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능차이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鹿茸은 어느 것이든 前述한 일반적인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조건 高價라고 하여 효능도 우수할 것이라는 일반의 생각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p>	<p>것을 배합사료 2kg, 건초 3kg과 보리겨 3kg을 급여한 결과 반추와 변과 외 관상 형태 그리고 모든 생활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초를 kg당 350원으로 계산하면 마리당 1일 약 600원, 건초급여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동안에 마리당 약 108,000원씩 절약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건초 급여기에는 건초의 반을 칩줄기로 대체 함으로써 경비를 더 줄일 계획이다.</p> <p>양록업의 불황이 심해질수록 모든 양록인이 굳게 뭉쳐 서로 경영정보를 교환하여 실리적인 농장운영에 힘쓰면서 양질의 농용과 다수확품종 개량에 힘써서 외국산농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p>
--	--